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42
----------	------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채영향평가(‘14.11.) 개선과제를 「안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합리적인 사용료 분쟁해결기준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토록 명시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 위탁단체의 범위 구체화
- 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되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규정
※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시설은 활동(수련), 복지,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
- 위탁에 대한 사항 명확화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토록 명시
- 위탁기간 3년으로 규정 및 재계약에 관한 내용 명시
- 수탁자 선정 및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 구체화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토록 명시

- 개정조례안 : 불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부폐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 불임4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1. ~ 10. 21.(20일간)
- 현행조례 : 불임5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불임6

(붙임 1)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 따르며, 별표 3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구성하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문화의집 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 이희평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계장 장봉순
자	담당자 성명·전화	홍연아 (행정 2218)

[별표 3]

문화의집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반 환 사 유	발생일	환불액	비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u>취소</u> 또는 중지된 경우	—	전 액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 1/3경과 전	사용료의 2/3	
	이용기간 1/2경과 전	사용료의 1/2	
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기간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사용일 이후	1.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 남은 달은 전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예술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p>	<p>제1조(목적) 제11조에 따라</p>
<p>제9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생 략)</p>	<p>제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의한 경우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 따르며, 별표 3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p>
<p>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의집에는 1명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p>	<p>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구성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제17조(준용) 문화의집 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생략)	제18조(현행 17조와 같음)																																																										
[별표 3] 문화의집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문화의집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 환 사 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생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환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전일</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전일</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간 1/3경과 전</td><td style="padding: 10px;">사용료의 2/3</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간 1/2경과 전</td><td style="padding: 10px;">사용료의 1/2</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관 1/2경과 후</td><td style="padding: 10px;">반환하지 아니함</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전일</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이후</td><td style="padding: 10px;">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body> </table>	반 환 사 유	발생일	환불액	비 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 1/3경과 전	사용료의 2/3		이용기간 1/2경과 전	사용료의 1/2		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기관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 이후	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 환 사 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발생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환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td><td style="padding: 10px;">二</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전일</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간 1/3경과 전</td><td style="padding: 10px;">사용료의 2/3</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간 1/2경과 전</td><td style="padding: 10px;">사용료의 1/2</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이용기관 1/2경과 후</td><td style="padding: 10px;">반환하지 아니함</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전일</td><td style="padding: 10px;">전 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td><td style="padding: 10px;">사용일 이후</td><td style="padding: 10px;">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td><td style="padding: 10px;"></td></tr> </tbody> </table>	반 환 사 유	발생일	환불액	비 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二	전 액		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 1/3경과 전	사용료의 2/3		이용기간 1/2경과 전	사용료의 1/2		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기관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 이후	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	
반 환 사 유	발생일	환불액	비 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 1/3경과 전	사용료의 2/3																																																									
	이용기간 1/2경과 전	사용료의 1/2																																																									
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기관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 이후	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																																																									
	반 환 사 유	발생일	환불액	비 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二	전 액																																																									
이용기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 1/3경과 전	사용료의 2/3																																																									
	이용기간 1/2경과 전	사용료의 1/2																																																									
3.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기관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사용일 전일	전 액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일 이후	1.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 2.남은 달은 전액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42
----------	------

제안년월일 : 2015. 12.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시 자치법규 중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일하여 명시하고자 감면 대상자 선정근거를 법령에서 조례로 수정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 (안 제9조 제2항제4호)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생략)</p>	<p>제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p> <p>5.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p> <p>5. (현행과 같음)</p>